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2. 6. 14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2. 6. 14
- 라. 상징 및 의결일자

○ 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2. 6. 20) 상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권병준)

□ 제안사유

-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소사본동 및 고강본동 지역은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중동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 구사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건전문화 공간의 확충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조정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소사대공원은 소사본동 산53번지 일대 소사택지개발지구 서측의 개발제한구역에 42,530㎡의 규모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지식습득을 위한 문화공간을 소사생활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타 지역과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함
- 수주공원은 고강동 271번지 일대 수주로변 개발제한구역에 36,280㎡의 규모로 원종생활권역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여가공간 확충으로 신구시가지 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마목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찬성의견채택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8. 붙임서류

○ 의견서 1부

부천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서

의안번호	599	안건명	부천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
제 출 자	부천시장	의 결 연월일	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2. 6. 21)

부천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차원에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2002년 6월 21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부천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의안번호	제599호
의결년월일	2002. 6. 21 (제96회)

제출년월일 : 2002. 6.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사유

○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소사본동 및 고강본동 지역은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중동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건전문화 공간의 확충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조정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소사대공원은 소사본동 산53번지 일대 소사택지개발지구 서측의 개발제한구역에 42,530㎡의 규모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지식습득을 위한 문화공간을 소사생활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타 지역과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함
- 수주공원은 고강동 271번지 일대 수주로변 개발제한구역에 36,280㎡의 규모로 원종생활권역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여가공간 확충으로 신구시가지 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마목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

□ 시설별 도시계획입안 주요내용

1. 공원(소사대공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안)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원	근린공원 (소사대공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53번지 일원	42,530	

-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총계		42,630	4,090	
도로 및 광장	B=2.0~8.0m, L=1,550.2m 광장 N=1개소	4,832	-	
조경시설	사각정자, 막구조파고라, 화훼류원, 과학상징조형물	-	-	

휴 양 시 설	등의자, 평의자, 휴게공간(1), 휴게공간(2), 야유회장	823	-	
운 동 시 설	농구장, 체력단련시설	1,205	--	
교 양 시 설	도서관, 야외학습장, 별자리관찰원	2,364	4,000	
편 익 시 설	화장실	207	90	
관 리 시 설	주차장, 관리주차장, 안내판	5,413	--	
녹지 및 기타	녹지	27,686	-	

○ 추정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용역비	GB훼손부담금	비고
계	10,956	7,430	2,556	400	570	

○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001.	2002.	2003.	2004.	비고
계	10,956	30	3,170	4,800	2,956	
국 비	1,400		700	600		
도 비	1,400		700	600		
시 비	8,156	30	1,770	3,400	2,956	

○ 토지편입현황

구 분	계	진	답	임야	묘지	잡종지	도로, 유지
면 적(m ²)	42,530	8,720	4,190	8,603	20,344	290	383
구성비(%)	100	20.20	9.85	20.23	47.83	0.68	0.91
필 지 수	18	7	2	2	4	1	2

○ 사업시행기간 : 2001~2004년

2. 공원(수주공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안)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신설	공원	근린공원 (소사대공원)	부천시 오정구 고장동 271번지 일원	36,280	

○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m ²)	구성비(%)	시설내용
합계	36,280.0	100.0	
도로 및 광장	5,971.0	16.5	도로, 광장 2개소
조경시설	337.0	0.9	사각정자, 문화상징조형물, 화훼류원, 바다분수, 화분대
휴양시설	1,012.0	2.8	등의자, 평의자, 휴게마당, 변영로기념마당, 모임마당, 약속마당
운동시설	1,128.0	3.1	농구장
교양시설	3,887.0	10.7	도서관, 문화행사장
관리시설	1,420.0	3.9	관리사무소, 주차장, 안내판
녹지 및 기타	22,525.0	62.1	녹지

○ 추정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용역비	GB훼손부담금	비고
계	11,530	7,230	3,300	400	600	

○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001.	2002.	2003.	2004.	비고
계	11,530	30	2,300	4,400	4,800	
국비	1,400			700	700	
도비	1,400			700	700	
시비	8,730	30	2,300	3,000	3,400	

○ 토지편입현황

구분	계	전	답	임야	묘지	잡종지	도로
면적(m ²)	36,280	34,059	301	1,882			38
구성비(%)	100	93.88	0.83	3			0.10
필지수	27	21	2	5			1

○ 사업시행기간 : 2002 ~ 2005

□ 결정권자

○ 공원(근린공원) : 경기도지사

□ 공원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제공
-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 주요 관련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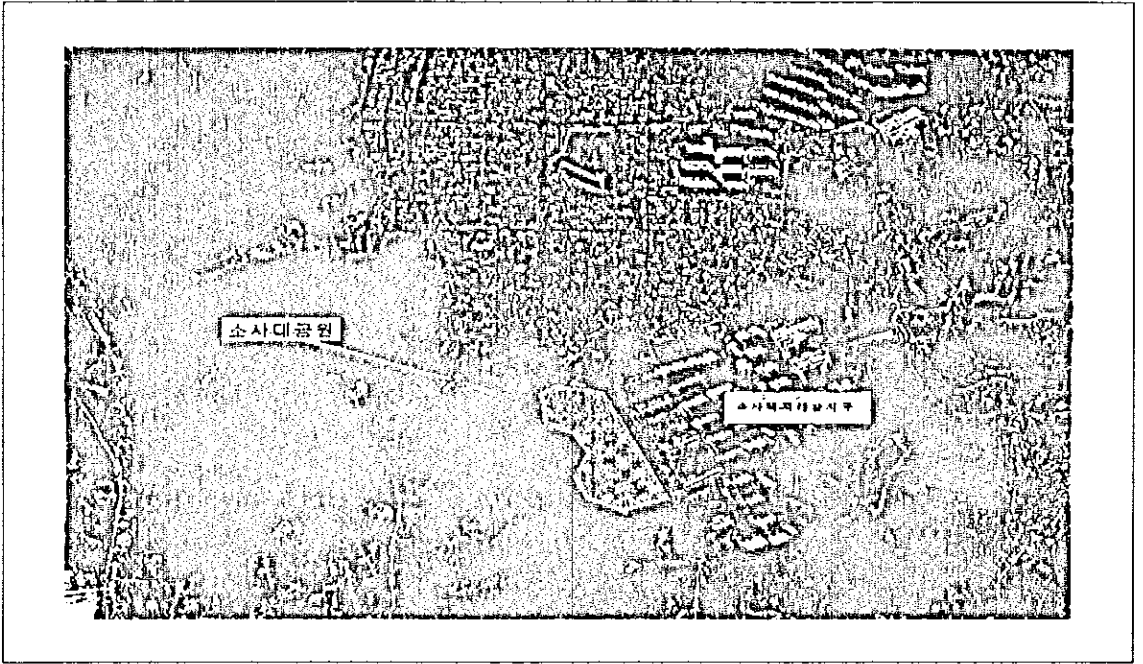
- 도시계획법령
 - 법 제19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입안 및 도시계획의 결정
 - ※ 공원의 구조 및 설치기준 : 도시공원법
- 도시공원법령
 - 법 제4조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공원조성 설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
 - 법 제10조제5항에 의거 GB 내 시설은 GB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농지법 및 산림법령
 - 농산지원사업소 및 녹지공원과 협의 예정
- 환경정책기본법령
 - 영 제3조제1항의 [별표 2] 환경성 검토대상(GB에서 사업계획의 면적 5,000m² 이상)
 -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 예정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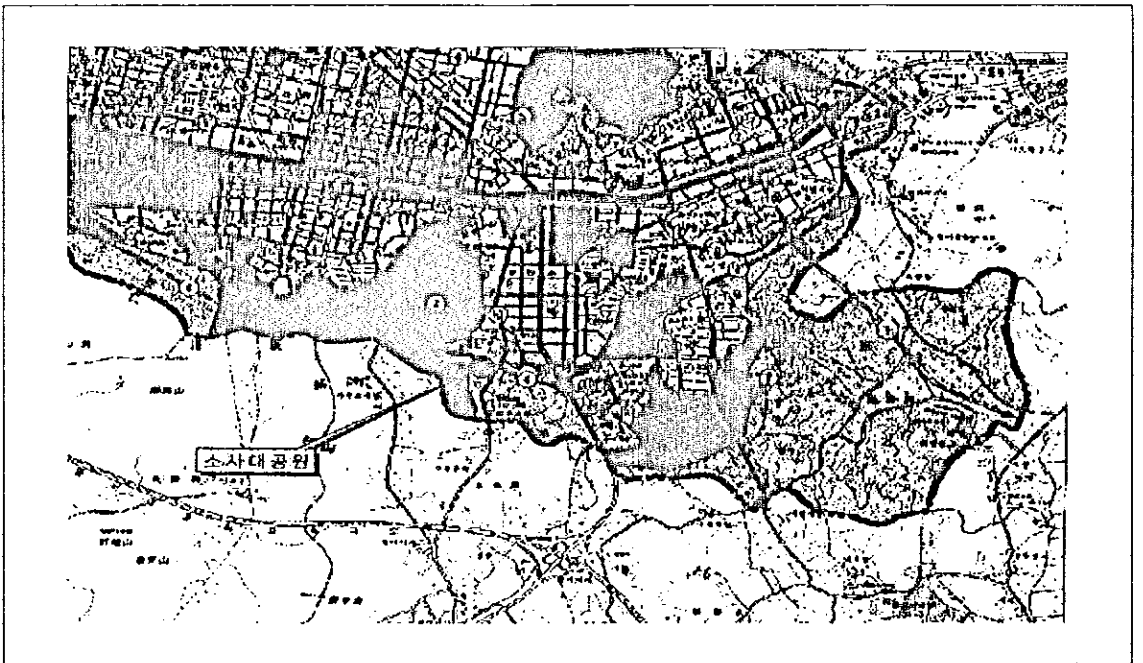
○ 현황도(위치도) 및 현장사진, 도시계획결정도

현 황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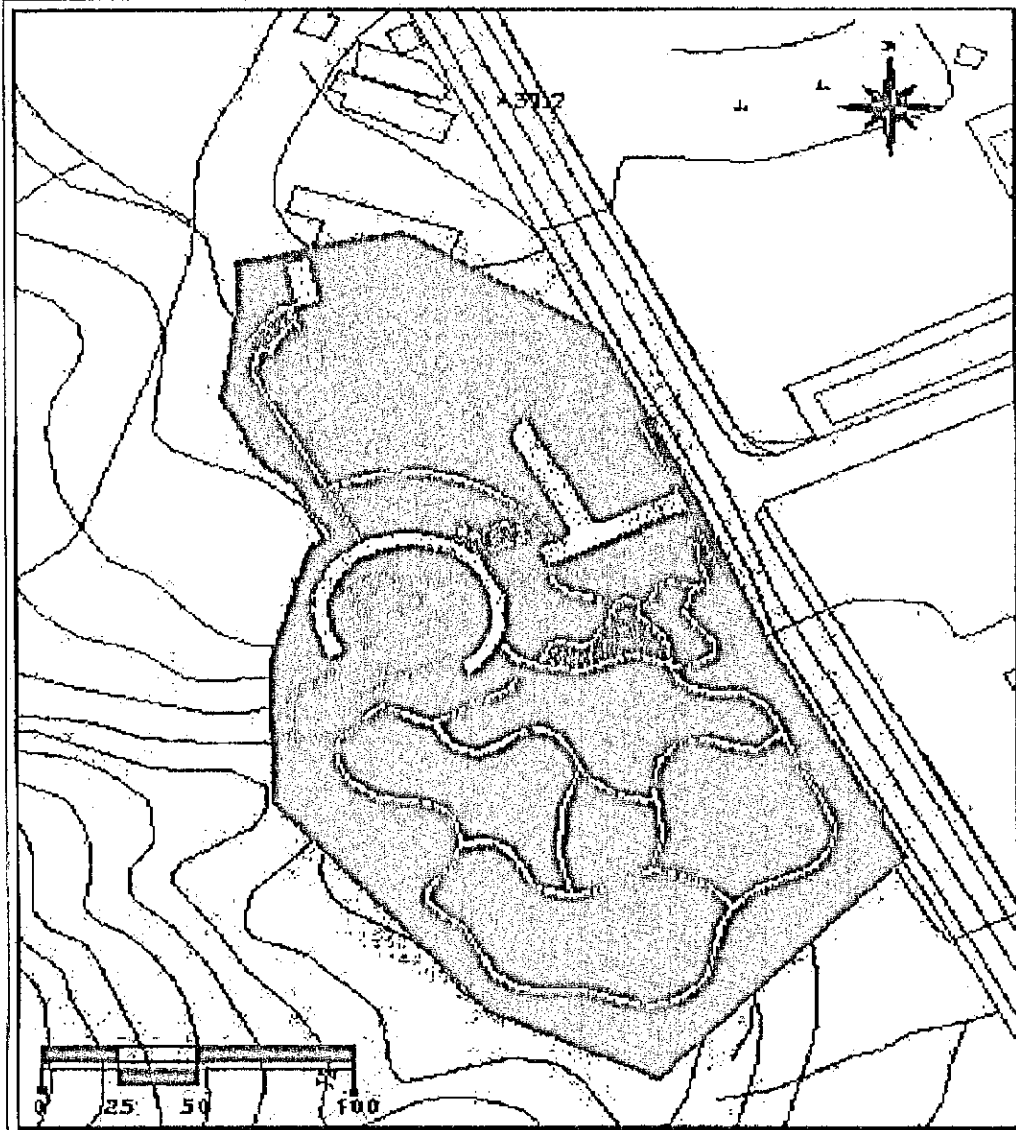
□ 소사대공원(근린공원)



위 치 도



토지 이용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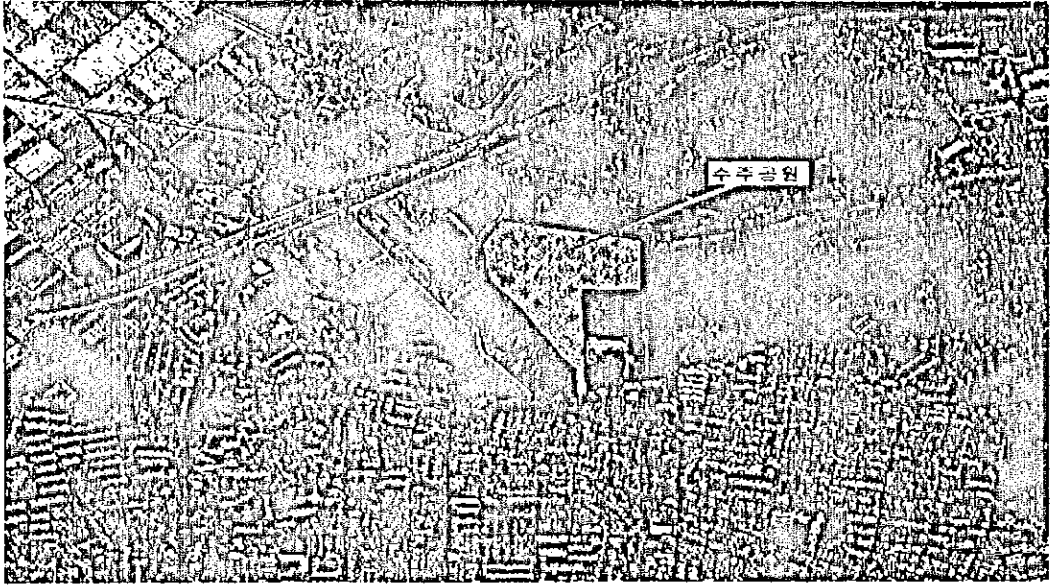


□ 단 계

	도심지역		중심지역		주요지역		보통지역
	공업지역		원시지역		원시지역		기타지역(농지)

현 황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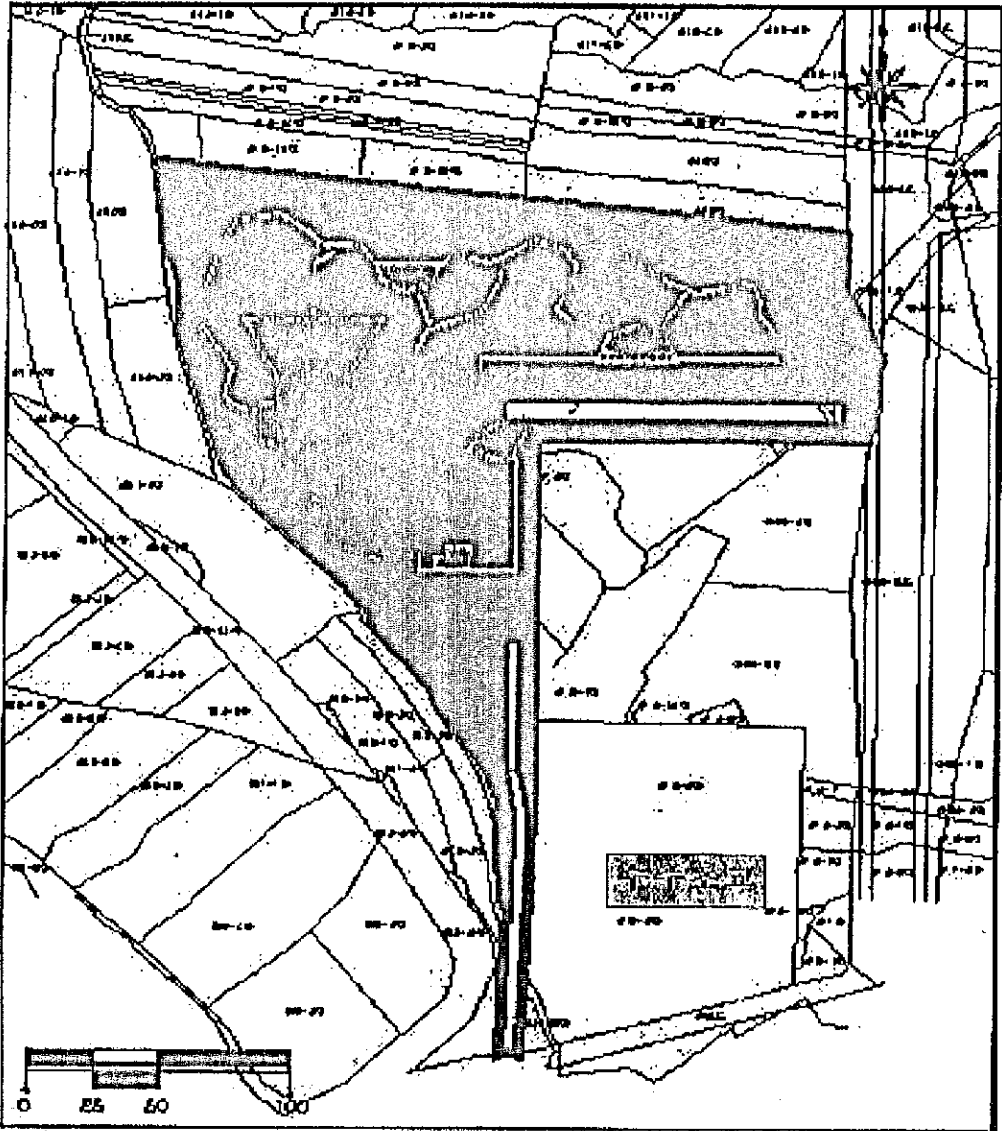
□ 수주공원(근린공원)



위 치 도



토지이용계획도



도청청사	공공시설지	주거시설지	공업시설지	주요시설지
교차시설지	정비시설지	공공시설지	공공시설지	기타시설지(노지)